

制定된 圖書館振興法 全文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인]

1991년 3월 8일

국무총리 노재봉

국무위원 이어령
문화부장관

◎法律 第4,352號

◇圖書館振興法 制定理由

최근 圖書館은 教育·情報 및 文化的 中心機關으로서의 그 機能과 役割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圖書館이 大學등 各級 學校의 教育活動을 지원하는 教育的 機能을 수행하는 외에 각종 文化施設과 協力하여 地域文化空間으로서의 役割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國民의 文化享受權을伸張하고, 圖書館業務의 電算化·標準化 및 協力網을構築하여 情報의 이용과流通을活性화하며, 특히 公共圖書館에 대한 綜合的인 振興政策을 國家의in 次元에서 수립·추진함으로써 圖書館의 計期的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1. 圖書館의 定義를 公衆에의 定報提供을 통하여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하는 施設로 规定함.
2. 圖書館이 地域文化의 中心機關으로서의 役割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地域內 각종 文化施設과 協力하도록 함.
3. 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圖書館機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主要長·短期 政策과 施策樹立등에 관한 諮問機關으로 文化部長官 소속하에 圖書館發展委員會를 設置함.
4. 政府는 圖書館의 設立, 施設 및 資料의 확충, 司書職員의 資質向上 및 研究등을 위하여 圖書館振興基金을 設置·運用할 수 있도록 함.

5. 國立中央圖書館을 文化部長官 소속으로 하고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확충함.
6. 원활한 圖書流通을 위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은 出版關聯專門機關·團體등과 協議하여 圖書 및 連續刊行物에 대한 國際標準資料番號를 부여하도록 함.
7. 圖書館 從事者의 資質向上과 專門業務 수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研修機能을 확충하는 한편 圖書館 운영의 專門化를 위하여 國·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을 司書職으로 换補하도록 하되, 司書職의 現員 부족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時期까지는 현재와 같이 行政職으로도 换할 수 있도록 함.
8. 公共圖書館의 施設 및 資料의 확충을 위하여 國家·脂肪自治團體의 公共圖書館 設立·育成業務를 规定하고, 地域의 特性에 따라 分館·移動圖書館 및 貸出文庫의 設置를 规定함.
9. 公立公共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등을 위하여 文化部長官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0. 民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團體와 개인이 公共圖書館을 자유롭게 設立·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을 登錄制로 하고, 私立公共圖書館의 지원·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함.
11. 大學 및 大學教育課程이상의 教育機關에는 大學圖書館을,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이에準하는 各種學校에는 學校圖書館을 각각 設置하여 研究 및 教育活動과 관련된 圖書館機能을 수행하도록 함.
12. 圖書館資料의 效率的인 流通·管理 및 이용을 위하여 圖書館協力網을 구성하고 各級 圖書館 및 文化施設과 協力關係를 유지하도록 함.
13. 文化部長官은 私立公共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의 登錄 및 指導業務를 管掌하도록 하 고 필요한 경우 그 業務의 일부를 市·道 또는 圖書館協會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도록 함.

圖書館振興法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圖書館의 設置·운영과 奉仕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文化·教育施設과의 相互協力增進을 도모함으로써 社會 각 분야에 대한 知識·情報의 제공 및 流通의 效率화와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萬集·整理·分析·보존·蓄積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の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情報利用·調查·研究·學習·敎養 등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하는 施設을 말한다.
2. “圖書館資料”라 함은 圖書館의 萬集·整理·分析·보존·蓄積하는 圖書·記錄·小冊子·連續刊行物·樂譜·地圖·사진·그림등 각종 印刷資料, 映畫필름·슬라이드·音盤·비디오物·마이크로形態物·테이프 등 視聽覺資料, 電算化資料, 公文書 등 行政資料, 鄉土資料 기타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말한다.
3.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公衆의 情報利用·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을增進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4. “大學圖書館”이라 함은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放送通信大學·開放大學·專門大學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敎育課程이상의 教育機關에서 教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5.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에서 教員

과 學生의 教授·學習活動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 또는 圖書室을 말한다.

6. “專門圖書館”이라 함은 그 設立機關·團體의 所屬員 또는 公衆에게 特定分野에 관한 專門의 인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7.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障碍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學習·敎養·調查·研究 및 文化活動 등을 위한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第3條 (圖書館의 종류)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公立圖書館·私立圖書館으로 구분하고, 그 設立目的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公共圖書館·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으로 구분한다.

第4條 (大學圖書館 등의 이용제공) ①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그 設立目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公衆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당해 圖書館의 特性에 맞는 平生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

第5條 (圖書館의 施設·資料) ①圖書館은 圖書館 資料(이하 “資料”라 한다)의 보존·整理와 利用者의 편의를 위하여 圖書館業務에 적합한 施設 및 資料를 갖추어야 한다.

②圖書館의 종류별 施設 및 資料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司書職員등) ①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 운영에 필요한 司書職員·司書教師 또는 實技教師(司書)를 두어야 하며, 社會敎育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敎育専門要員을 둘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은 1級 正司書·2級 正司書 및 淩司書로 구분하며 그 資格要件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書職員 등의 研修 기타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施

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7條 (文化施設과의 協力) 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文化院·博物館·美術館 등 각종 文化施設과 協力하여야 한다.

第8條 (資料의 交換·移管·폐기 및 除籍) ①圖書館은 資料의 效率적 이용을 위하여 資料를相互交換 및 移管할 수 있고 利用價值가 없게 되거나 汚損된 資料를 폐기 또는 除籍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換·移管·폐기 및 除籍의 基準과 條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圖書館發展委員會) ①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圖書館機能의 效率적 수행을 위한 다음의 중요사항에 관한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文化部長官 소속하에 圖書館發展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圖書館發展基本政策
2. 圖書館協力網의 구성 및 운영
3. 圖書館振興基金의 管理·운영
4. 기타 圖書館振興政策에 관하여 文化部長官이 附議하는 사항

②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圖書館振興基金) ①政府는 圖書館의 設立, 施設 및 資料의 확충, 司書職員의 資質向上, 研究 기타 圖書館 발전에 필요한 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圖書館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할 수 있다.

②基金은 다음 각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出捐金
2. 法人·團體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寄附金
3. 基金의 운영에서 생기는 收益金

第11條 (基金의 管理·운영) ①基金은 文化部長官이 管理·운영한다.
②基金의 造成 및 運用에 관하여 다음 각號의 사항은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基金造成計劃
2. 基金運用計劃
3. 기타 基金運用上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基金의 管理·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金錢 등의 寄附) 法人·團體 및 개인은 圖書館의 設立·施設·資料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圖書館 및 基金에 金錢 기타 財產을 寄附할 수 있다.

第13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圖書館이 아니면 圖書館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14條 (圖書館協會) ①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 상호간의 資料交換 및 業務協助, 圖書館의 운영·management에 관한 研究, 國際圖書館團體와의相互協力 기타 圖書館職員의 資質向上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文化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圖書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④國家는豫算의 條例에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第2章 國立中央圖書館

第15條 (國立中央圖書館) ①文化部長官 소속하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

②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館을 둘 수 있다.

第16條 (業務) ①國立中央圖書館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 다음 각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國內外資料의 蒐集·整理·分析·보존·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
2. 國內資料의 納本管理
3.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의 流通
4. 각종 書誌의 작성 및 標準화와 國際標準資料番號制度의 운영
5. 電算化를 통한 國家文獻情報體制 및 圖書館協力網의 統轄
6. 外國圖書館과의 協力 및 資料의 國際交流
7. 다른 圖書館에 대한 業務·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의 指導·지원

8. 讀書의 生活화를 위한 施策의 수립 및 실시
 9. 圖書館 운영에 관한 調査·研究
 10. 圖書館 職員에 대한 研修
 11. 기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 수행에 필요한 業務
- ②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과 協力하여야 한다.
- 第17條 (資料의 제공 및 納本)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圖書·連續刊行物·音盤·비디오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부터 30일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提供하여야 한다.
-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著者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부터 30일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 改訂版을 발행하거나 製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國立中央圖書館은 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 納本을 한 著者에게 지체없이 納本畢證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資料에 대한 정당한 补償을 하여야 한다.
- ④國立中央圖書館長은 納本의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 ⑤納本이 節次·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8條 (國際標準資料番號) ①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著者는 그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에 대하여 國立中央圖書館으로부터 國際標準資料番號(이하 “資料番號”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②國立中央圖書館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出版 등 관련 專門機關·團體 등과 協力하여야 한다.
- ③第1項의 规定에 의한 資料番號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公共圖書館

- 第19條 (設立) 國家, 地方自治團體, 民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하 “法人”이라 한다), 團體 또는 개인은 公共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

第20條 (業務) 公共圖書館은 情報 및 文化·教育 센터로서의 機能을發揮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資料의 蒐集·整理·分析·보존·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
2. 公衆에 필요한 情報의 提供
3. 地方行政 및 產業分野에 필요한 情報의 提供
4. 讀書의 生活화를 위한 計劃의 수립 및 실시
5. 講演會·鑑賞會·展示會·讀書會 기타 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의 主催 또는 嘉獎
6. 다른 圖書館과의 긴밀한 協力과 資料의 交換 또는 相互貸借의 실시
7. 圖書館 業務에 관한 調査·研究
8. 기타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機能 수행에 필요한 業務

第21條 (公共圖書館의 設立·육성 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社會의 情報提供 및 文化發展과 平生教育을 위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立·육성하여야 한다.

②公共圖書館은 어린이·老人·障礙人 등을 위한 圖書館奉仕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③公共圖書館은 모든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地域의 特性에 따라 分館·移動圖書館 또는 貸出文庫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22條 (公立公共圖書館의 운영) ①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이하 “公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의 運營費는 그 設立·운영하는 機關의 會計에서 이를 부담한다. 다만, 教育法 第52條의 规定에 의하여 教育長이 設立·운영하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 그 運營費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國家는 公立公共圖書館을 設立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의 設立·資料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第23條 (公立公共圖書館의 지원) ①文化部長官은 公立公共圖書館의 運營에 필요한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文化部長官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지원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24條 (國·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 및 運營委員會)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으로 補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共圖書館의 效率적인 운영과 각종 文化施設과의 긴밀한 協助를 위하여 당해 圖書館에 圖書館運營委員會를 둔다.

③圖書館運營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法人 등이 設立한 公共圖書館의 登錄등)

①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公共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 第6條의 规定에 의한 施設·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基準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第5條 및 第6條의 规定에 의한 施設·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基準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文化部長官은 期間을 정하여 是正을 命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③文化部長官은 第2項의 规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6條 (私立公共圖書館의 指導·지원) ①文化部長官은 第25條 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이하 “私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의 균형 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指導·지원을 할 수 있다.

②文化部長官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指導·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私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27條 (私立公共圖書館의 廢館申告) 私立公共圖

書館의 設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廢館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에게 廢館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28條 (私立公共圖書館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私立公共圖書館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第29條 (使用料) 公共圖書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 다만, 公立公共圖書館의 使用料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30條 (資料의 提供) 地方自治團體가 第17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管轄地域안에 있는 公共圖書館에 提供하여야 한다.

第4章 大學圖書館

第31條 (設置)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 및 다른 法律의 规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敎育課程이상의 教育機關에는 大學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32條 (業務) 大學圖書館은 다음 각號의 業務를 행한다.

1. 教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活動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整理·分析·보존·蓄積 및 그 이용
2. 效率적 教育課程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圖書館이용의 體系的指導
4. 다른 圖書館과의 協力과 圖書館協力網을 통한 資料의 流通
5. 기타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機能수행에 필요한 業務

第33條 (指導·監督) 大學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 기타 法律의 规定에 의한 당해 大學 또는 教育機關의 監督廳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第5章 學校圖書館

第34條 (設置)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에는 學校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35條 (業務) 學校圖書館은 다음 각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學校教育에 필요한 資料의 菲集·整理·分析·보존·蓄積 및 그 이용
2. 讀書指導 및 圖書館이용의 指導
3. 視聽覺資料의 開發·製作 및 이용
4. 기타 學校圖書館으로서의 機能수행에 필요한 業務

第36條 (指導·監督) 學校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의 規定에 의한 당해 學校의 監督廳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第6章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

第37條 (設立등) ①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團體 또는 개인은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

②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公衆이나 障碍人の 이 용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資料 및 司書職員에 관한 基準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第38條 (準用) 第25條 第2項·第3項 및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은 第3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第7章 圖書館協力網

第39條 (圖書館協力網의 구성) ①文化部長官은 資料의 流通·管理 및 이용 등에 관한 圖書館業務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圖書館의 相互協力を 도모하기 위한 連繫體制로서 다음 각號의 機能을 수행하는 圖書館協力網(이하 “協力網”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電算化情報體系를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
2. 書誌編纂·情報處理·奉仕活動 및 施設 등의 標準화
3. 分擔收書·相互貸借·綜合目錄·印刷카드制度 등 圖書館운영의 效率화

4. 기타 다른 圖書館과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

②協力網은 각종 圖書館으로 구성하고 協力網의 效率적 운영과 統轄을 위하여 中央館과 地域代表館을 두되, 中央館은 國立中央圖書館이 된다.

第40條 (中央館의 業務) 協力網의 中央館은 다음 각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地域代表館의 지정 또는 變更
2. 協力網의 機能수행에 관한 企劃·調整 및 指導
3. 協力網운영의 統轄

第41條 (地域代表館) ①地域代表館은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에 두되, 中央館이 이를 지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代表館은 中央館의 指導 및 調整을 받아 傘下地域協力網의 운영을 統轄하고 그 效率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市·郡 및 區(自治區에 한한다)에 地方代表館을 둘 수 있다.

第42條 (協力 등) 協力網機能의 效率적 수행을 위하여 圖書館의 設立者는 당해 圖書館에 필요한 施設·體制 등을 갖추어야 하며, 圖書館은 中央館 및 地域代表館의 指導에 따라 다른 圖書館 및 각 종 文化施設과 協力하여야 한다.

第43條 (協力網의 운영) 協力網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章 補 則

第44條 (權限의 委任·委託) 이 法에 의한 文化部長官의 權限의 일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第9章 罰 則

第45條 (過怠料) ①第25條 第1項 또는 第3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圖書館을 開設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7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당해 資料定價(그 資料가 非賣資料인 경우에는 당해 刊行資料의 原價)의 10倍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過怠料

에 處한다.

- 第46條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文化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文化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圖書館法은 이를 廢止

한다.

- 第3條 (圖書館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圖書館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私立公共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이 法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

- 第4條 (國·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에 관한 經過措置)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第24條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까지는 司書職 또는 行政職으로 補한다.

- 第5條 (圖書館協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從前의 圖書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圖書館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圖書館法을 引用한 경우에는 圖書館振興法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原稿募集

〈도서관문화〉誌는 700여 단체회원과 1,300여 개인회원의 대변자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라) 기타
2. 보내실 곳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전화 : 535-4868 · 5616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 ("도서관문화"자료실 영구비치용)를 첨부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圖書館文化 편집실